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 730,1062(병합) 판결 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판 결

사건 2014고단730, 1062(병합)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30】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04:00경 대전 서구 B, 1층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8. 14:53경 대전 서구 E건물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위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아, 아"라고 신음소리를 내고 피해자에게 "오빠 야, 같이 섹스하자, 거기 어디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106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9.경까지 사이 어느 날 새벽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G(여, 24 %)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는 가슴 밑으로 내린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1.30.04:00경 대전 서구 H, 3층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Jol 춤을 추리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엘지유플러스 갤럭시노트2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숙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4646호)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0의 고소장
- 1. 수사보고(고소장 미첨부에 대한 수사)
- 1. 피해자 제출(통화내역, 카톡대화내용), -제2차통화내역, -참고인 F 발신표시제한 통화내역 캡쳐, -용의자가 피해자 D 행세하며 카톡한 내용, 회신내역, 사진(피해품 사진), D 제출 카카오톡 대화캡쳐내용, sk통화내역

[판시 제3, 4, 5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8951호)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판시 제2항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 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제5항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정환